

함께 만드는 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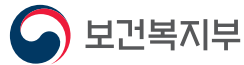


복지로로 신고 하시고
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한 경우

**국가가 직접
포상금을 드립니다.**

지금 기준

환수결정금액	포상금 지급액
1억원 이하	환수결정금액의 30%
1억원 초과~5억원 이하	3천만원+ 1억원 초과금액의 20%
5억원 초과~20억원 이하	1억1천만원+ 5억원 초과금액의 14%
20억원 초과~40억원 이하	3억2천만원+ 20억원 초과금액의 8%
40억원 초과	4억8천만원+ 40억원 초과금액의 4%



부정수급 핫라인

✓ 신고상담

1551-1290

✓ 신고요령

피신고자에 대한 정보,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,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(기간) 및 지역, 부정수급 방법,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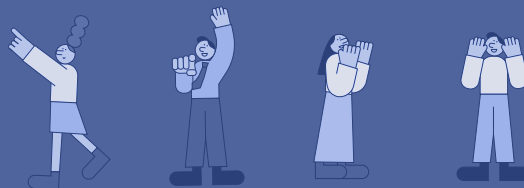
✓ 신고방법

| 인터넷 | 복지로 사이트 www.bokjiro.go.kr

| 팩 스 | 044-202-3906

| 우 편 |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
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

※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



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

복지로에

www.bokjiro.go.kr

신고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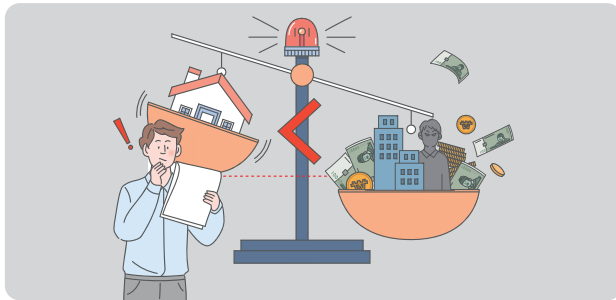
**부정수급
집중신고기간 운영**
2024. 5.13. - 7.12.



‘부정수급’이란?

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,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,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,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
부정수급 주요 유형

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, 의료급여)

-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,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
-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



사회서비스 바우처

-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



장애인연금·수당

-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



기초연금

-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,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

함께 만드는 복지



신고 처리 절차

부정수급 신고



신고인(신고서 제출)
인터넷, 팩스, 우편



접수 및 분류



보건복지부
- 접수결과 통보(SMS 또는 이메일)
- 처리부서 지정



처리결과 통보



보건복지부 사업부서
조사 결과 통보(SMS 또는 이메일)



포상금 지급



신고인 → 보건복지부
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

복지급여조사(담) → 신고인
포상금 지급(계좌이체), 60일 이내